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6. 16. 이강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6.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7회 국회(임시회)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7. 18.)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7. 21.)

상정

○ 제429회 국회(정기회)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1. 24.)

상정

○ 제430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2. 15.)

상정

○ 제433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31.)

상정

-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4. 2.)

상정 · 축조심사

- 제435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5. 12.)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1차 전체회의(2026. 5. 14.)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강일의원)

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할 경우 산정 가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보다 낮은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소액주주의 경우 합병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가조작이나 저가 합병을 통한 지배주주의 이익 편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합병 등에서 산정되는 가액에 대해 공정가액 산정 원칙을

법에 명문화하고, 순자산가치를 하한선으로 설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65조의4제2항 신설 등).

나. 주요내용

1) 합병가액 산정 기준 명시 (신설 제165조의4제2항)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함. 다만, 산정된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를 가액으로 간주 함.

2) 관련 조문 번호 정비(개정 제165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

기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변경하고, 관련 조항인 제165조의18제4호 역시 조문 번호에 맞게 수정.

3. 대체토론 요지

없음

4.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준현의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5. 찬반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부대의견

없음